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2020. 12.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66
----------	--------

2020. 12. 2.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0. 11. 13.
- 다. 회 부 일 : 2020. 11. 13.

##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3.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 가. 세 입
  - 해당 없음.
- 나. 세 출
  -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5억9,964만8천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38억8,399만3천원 대비 18.43% 증가된 규모임.

(단위:천원)

구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4,599,648	3,883,993	715,655	18.43%
정책사업	2,230,645	1,641,677	588,968	35.88%
행정운영경비	2,369,003	2,242,316	126,687	5.65%

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4,599,648	3,883,993	715,655	18.43%
일반공공행정	2,230,645	1,641,677	588,968	35.88%
입법및선거관리	2,230,645	1,641,677	588,968	35.88%
선진의회상 정립	2,230,645	1,641,677	588,968	35.88%
의정활동 지원	2,175,939	1,561,837	614,102	39.32%
의정활동 홍보	54,706	79,840	△25,134	△31.48%
기타	2,369,003	2,242,316	126,687	5.65%
기타	2,369,003	2,242,316	126,687	5.65%
행정운영경비	2,369,003	2,242,316	126,687	5.65%
인력운영비	2,221,885	2,087,716	134,169	6.43%
기본경비	147,118	154,600	△7,482	△4.84%

- 구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 전체 예산의 48.50%, 22억3,064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35.88%, 5억8,896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3억6,900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5.65%, 1억2,668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음.

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	
			금액	증감률
총 계	4,599,648	3,883,993	715,655	18.43%
인건비	2,086,151	1,950,136	136,015	6.97%
인건비	2,086,151	1,950,136	136,015	6.97%
보수	1,988,657	1,859,474	129,183	6.95%
기타직보수	73,101	71,607	1,494	2.0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393	19,055	5,338	28.01%
물건비	1,696,748	1,710,409	△13,661	△0.80%
일반운영비	211,861	229,361	△17,500	△7.63%
사무관리비	169,678	176,459	△6,781	△3.84%
공공운영비	42,183	52,902	△10,719	△20.26%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여비	67,420	81,280	△13,860	△17.05%
국내여비	43,420	57,280	△13,860	△24.20%
국제화여비	24,000	24,000	0	0.00%
업무추진비	65,095	65,095	0	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81	3,881	0	0.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	2,320	0	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	50,494	0	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	8,400	0	0.00%
직무수행경비	83,580	83,340	240	0.29%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	7,800	0	0.00%
직급보조비	61,380	61,140	240	0.39%
특정업무경비	14,400	14,400	0	0.00%
의회비	1,268,792	1,251,333	17,459	1.40%
의정활동비	237,600	237,600	0	0.00%
월정수당	560,667	545,398	15,269	2.80%
의원국내여비	11,210	11,210	0	0.00%
의원국외여비	61,425	61,425	0	0.00%
의정운영공통경비	109,188	109,188	0	0.0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	120,893	0	0.00%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4,700	4,700	0	0.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7,000	27,000	0	0.00%
의원정책개발비	90,000	90,000	0	0.0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7,662	17,181	481	2.8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1,447	19,738	1,709	8.66%
경상이전	138,347	135,095	3,252	2.41%
포상금	98,747	95,495	3,252	3.41%
성과상여금	98,747	95,495	3,252	3.41%
연금부담금등	39,600	39,600	0	0.00%
의원상해부담금	39,600	39,600	0	0.00%
자본지출	678,402	88,353	590,049	667.83%
시설비및부대비	594,402	50,000	544,402	1088.80%
시설비	594,402	50,000	544,402	1088.80%
자산취득비	84,000	38,353	45,647	119.02%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34,353	45,647	132.88%
도서구입비	4,000	4,000	0	0.00%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설비(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 : 594,402천원(1088.80%)
  - 자산 및 물품취득비(본회의장 PC 및 책상 제작 설치): 80,000천원(132.88%)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속기 사무보조 인건비) : 24,393천원(28.01%)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내여비(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43,420천원(△24.20%)
  - 공공운영비(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 42,183천원(△20.26%)

#### 4. 검토결과

##### 가. 예산규모

-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의 0.70%인 45억9,964만8천원으로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 22억3,064만5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6,900만3천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 38억8,399만3천원 대비 18.43%, 7억 1,565만5천원이 증액되었음.

#####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연금부담금등,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의정공통업무지원 등의 사업” 예산액은 21억1,35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1,410만2천원, 29.05% 증액되었음. 이는 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비 5억 9,440만2천원,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PC 및 책상 제작 설치비 8,000만원 증가로 인한 것임.

- “국외 선진의회 연수” 사업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 의회비(의원국외여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6,240만5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구성되었음.
-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기획보도 및 마포구의회 지역신문 광고금액으로서 5,470만6천원이며 전년대비 2,513만4천원, 31.48%이 감액되었음. 이는, 전년도 편성된 디지털영상게시판 구입비 2,435만3천원이 사업 완료에 따라 감액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액은 22억2,188만5천원이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0.9%)과 속기 사무보조 채용 등이 반영되어 6.43%, 1억3,416만9천원 증액되었음.
-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1억4,711만8천원이며 전년대비 748만2천원, △4.84% 감액되었음. 이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를 35%만 편성하여 전년대비 1,386만원, △27.5% 감액 편성에서 기인된 것임.

## 5. 검토의견

-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에 따라 한도액 제한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청사 방송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본회의장 PC 등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액 외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보임.

- 의회사무국은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의회 시설사업을 제외하고는 같거나 총액한도액 범위에서 편성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원국외여비 위법 집행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sup>1)</sup> 예산 삭감 등 제제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된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둘째, 의정활동 홍보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의정홍보팀 구성 후 홍보 및 광고 실적을 보면 언론사 지면 홍보 및 SNS 활용한 의정 홍보 실적 외 기타 매체를 활용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표.1 2020 매체별 홍보 현황]

홍보매체		방송	신문(중앙)	신문(광역)	신문(지역)	SNS
매체종류	합계	(딜라이브TV)	(서울신문)	(매일일보, 산경일보, 시민일보, 시정일보, 신아일보, 에코한국, 데일리, 천국매일, 데일리한국, 한강타임즈 등)	(마포신문, 마포타임즈, 마포인삼개신문, 서부신문, 월간마포, 마포명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광고건수	30	1	0	12	17	0
보도건수	539	17	1	210	145	166

- 따라서, 구의회에 대한 구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청사외벽 홍보판부터 방송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효과의 다변화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존 관행적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아쉬움이 있으므로 2021년

1) 관련한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지방자치·분권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성이 보이므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